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12. 9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12. 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5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12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오정구 내동 54-3번지 내동 소방파출소는 1978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,
-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긴급출동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주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폭(6~8m)이 좁아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
- 기존 소방파출소(내동 54-3) 부지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(내동 60) 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,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존 소방파출소의 건물노화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저하되고 주택밀집 및 진입 도로의 협소로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
- 기존 소방파출소는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 부지로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고자 함.

다. 관련근거

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, 제7호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기존 소방파출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?	○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.

○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도비를 확보한 만큼 소공원 조성비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

○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의건서

의안번호	254	안전명	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75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5차 본회의(1999. 12. 24)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

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소방파출소는 긴급출동시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, 주진입도로 및 주변도로폭이 6~8미터로 좁아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999년 12월 24일

부천시의회 의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

의안번호	제254호
의결년월일	99. 12. 24 (제75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관내 오정구 내동 54-3번지 내동 소방파출소는 1978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급격이 저하되어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,
-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긴급출동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주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폭(6~8m)이 좁아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
- 기존 소방파출소(내동 54-3) 부지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 소공원으로 활용하고,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(내동 60) 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,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들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기존 소방파출소의 건물노화로 기능성과 사용성이 저하되고 주택밀집 및 진입도로의 협소로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
- 기존 소방파출소는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 부지로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, 제7호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안

□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→공용의청사)변경결정조서

구 분	시 설 명	세부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당 초	공원	어린이공원	부천시 오정구 내동 60번지	1,459.5	
변 경	공용의청사	소방파출소	부천시 오정구 내동 60번지	1,273.6	감185.9m' ※도로(대1-2)편입 면적 중복지정

□ 변경결정사유

-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소방파출소는 긴급출동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,
- 주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폭(6~8m)이 좁아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 부지로 이전코자 함.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일 : 1967. 11. 11(건설부 고시 제736호)
- 소방파출소 신축사업개요
 - 위 치 : 오정구 내동 60번지
 - 시설규모 : 562㎡(지상 2층, 지하 1층)
 - 사업기간 : 2000. 1~2000. 12
 - 사업비 : 546,700천원(자금조달계획 : 도비)
 - 사업시행자 : 경기도 소방본부
- 기존 소방파출소 활용계획
 - 위 치 : 오정구 내동 54-3번지
 - 면 적 : 845.7㎡
 - 소방파출소 건축연도 : 1978. 10. 1
 - 활용계획 : 소공원조성(어린이 놀이시설+소공원)
 - 사업기간 : 2001. 1~2001. 12
 - 사업비 : 110,000천원(자금조달계획 : 시비)
- 변경결정권자 : 부천시장

